

**[1] p.95: 위 1행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었다. 이후에 추가**

개정되었다. 그 후에도 전업주부 및 경력단절여성, 청년 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고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이 여러 차례 이뤄졌다.

**[2] p.97: 위 7행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이후를 다음과 같이 변경**

따라서 일정 수급연령에 도달한 것을 이유로 하는 노령연금(국민연금법 제61조) 외에도 가입 중에 생긴 질병(당해 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법 제67조 제1항). 또한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법 제72조 제1항).

**[3] p.98: 아래 8행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이후를 다음과 같이 변경**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둘 이상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가입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시행령 제2조 참조). 또한 18세 미만인 자라도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 가입자가 된다(법 제8조 제2항).

**[4] p.104: 아래 3행의 '말한다.'를 다음과 같이 변경**

말하며(법 제17조 제2항), 월단위로 계산한다(법 제17조 제1항).

**[5] p.105: 아래 13행의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을 다음과 같이 변경**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6] p.107: <(6) 수급권의 보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변경**

연금수급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상속대상에서 제외되며,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법 제58조 제1항). 또한 수급권자에게 이미 지급된 급여라 하더라도 150만 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다(법 제5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4조). 또한 수급자가 소정 금액 이하의 급여를 본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를 '급여수급전용계좌' 라고 한다)로 입금하도록 공단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도 압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법 제58조 제3항).

또한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감면한다(법 제60조).

**[7] p.113: 아래 1~2행(가입자가~ 지급된다.)을 다음과 같이 변경**

노령연금 지급연령 미만인 가입자가 연금가입기간(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일 것,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중에 장애가 발생하면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이 지급된다(제67조 제1항).

[8] p.114: **아래 4~16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

장애등급은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자가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 완치되지 아니하면 그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이 기간 안에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완치일을 기준으로 장애를 확정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시점에 결정한다. 다만, 그 1년 6개월이 지난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아니한 자가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에 따라 그 청구한 날 또는 완치일 중 빠른 날, 또한 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장애 재판정을 받아 장애연금의 수급권이 소멸된 자가 장애연금수급권을 취득할 당시의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된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에 따라 그 청구일과 완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한다(법 제67조 제2항). 장애의 정도에 관한 장애등급은 1급, 2급, 3급 및 4급으로 구분하되, 등급 구분의 기준과 장애 정도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67조 제5항; 시행령 제46조).

[9] pp.118-119: **<(4) 유족연금> 첫 번째 문단(국민연금 가입자~ 지급할 수 없다.)을 다음과 같이 변경**

노령연금 수급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법 제72조 제1항). 다만,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예컨대 직역연금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기간) 또는 국외이주·국적상실 기간 중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법 제72조 제2항).

[10] p.119: **위 5행의 '18세'를 '25세'로 변경**

[11] p.119: **위 6행의 '18세'를 다음과 같이 변경**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25세

[12] p.119: **위 7행의 '61세'를 '60세'로 변경**

[13] p.119: **아래 11행의 ④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④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14] p.119: **아래 1행의 '18세'를 '25세'로 변경**

[15] p.120: **위 5~6행의 '[2010년의 경우 월 1,791,955원]'을 삭제**

[16] p.121: **아래 2행의 '사망'을 '사망(법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제외)'로 변경**

[17] p.123: **아래 13행의 '아니할 수 있다.'를 '아니할 수 있다(법 제82조 제1항).'로 변경**

[18] p.123: **아래 9행의 '아니할 수 있다.'를 '아니할 수 있다(법 제82조 제2항).'로 변경**

[19] p.123: **아래 5행의 '지급하지 않는다.'를 '지급하지 않는다(법 제82조 제3항).'로 변경**

[20] p.124: **위 12행의 '지급은 정지된다.'를 '지급은 정지된다(법 제56조 제1항).'로 변경**

[21] p.124: **위 13행의 '20'을 '30'으로 변경**

[22] p.124: **아래 10행의 '않는다.'를 '않는다(법 제56조 제2항).'로 변경**